

Q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제조업에서 채용시 8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업장의 경우 금번에 비정규직에 있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들은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합니다. 과거 비정규직 직원들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기안전교육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매일 반장집회시 일일 안전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였을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해 별도의 채용시 교육(8시간)을 해야 하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동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이므로 별도의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호이스트를 운전하던 사람을 엘리베이터 운전원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번 항목인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보면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 고정식 크레인·리프트·곤도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운전원을 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자로 해석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인건비는 건설용리프트 운전자, 고정식 크레인·리프트·곤도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는바, 귀하가 질의하신 엘리베이터 운전원은 동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는 운전원이 없어도 그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Q

외출비계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강관비계나 통나무비계 조립시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때 외출비계 설치 여부
2.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외출비계에 사용하는 작업발판의 경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A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쌍줄로 하여야 하되, 외줄로 하는 때에는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작업발판 설치 용이 등 가능한 한 쌍줄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까치발(Bracket)등을 설치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면 외출비계를 설치하여도 됩니다.

2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1조 제2호에 의하면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외출비계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3cm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외출비계를 설치할 경우 작업발판의 폭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3-18호)제367조 제1항에 의하면 외출비계용 작업대의 폭을 25cm 이상, 3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작업을 고려하여 적정한 폭(25cm 이상)이 확보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우리 현장은 2003년 7월에 착공하여 2006년 7월에 준공하는 총공사비 약79억원의 공사로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왔으나 금번 전담기관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비자격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교체코자 합니다. 이에 적법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A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귀사업장이 총공사비 약79억원의 건설공사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도를 받고 있다면 비자격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